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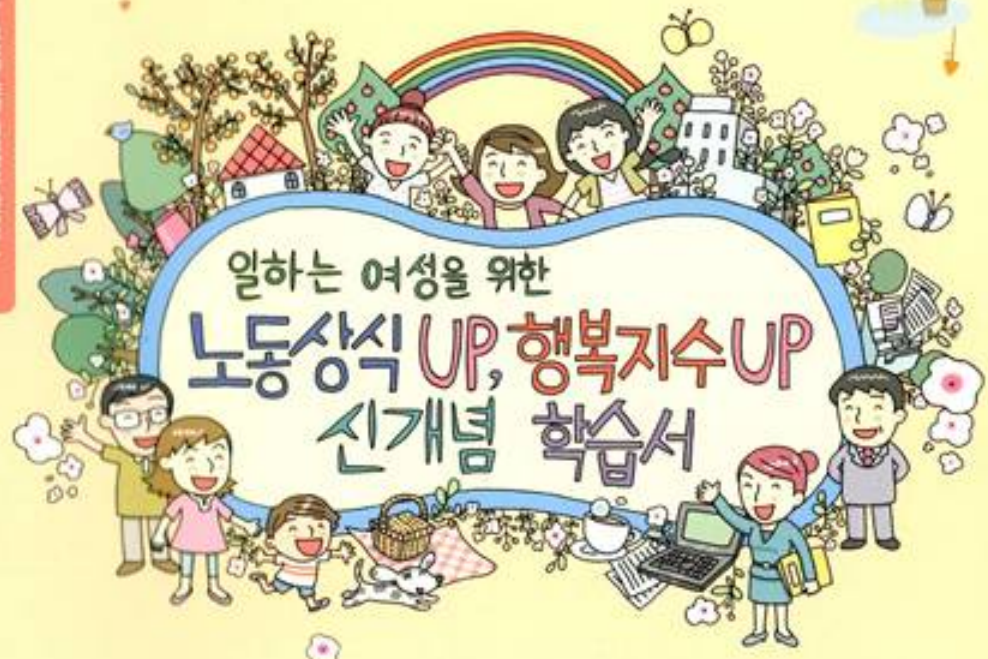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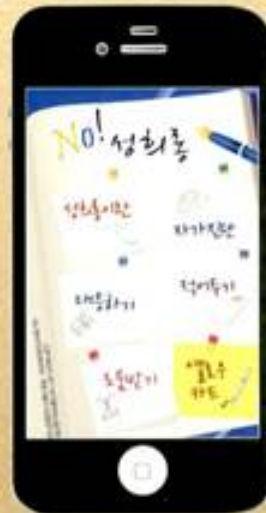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오시는길



직장내성희롱 예방 어플도 있어요.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어플 **No! 성희롱**도 제작했거든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성희롱**을 검색하시고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이 어플리케이션은 책자에 있는 내용뿐 아니라
입증을 위한 **적어두기** 기능과 **델로우카드**를 활용한
경고기능까지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어플 초기화면 →



상사와 직원이
서로 몰래보는 책 **1**위



(사)서울여성노동자회
SEOUL WOMEN WORKERS ASSOCIATION

들어가는 말

고용평등상담실을 찾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지난 30여년간 법제도의 개선과 사회의 변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기초적인 법지식을 몰라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를 접하다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여성으로서 삶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일하는 여성으로서 법권리뿐 아니라 건강하고 밝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2012년 7월 서울여성노동자회

활용법

공부라는 부담은 **NO!**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조금씩만 보면 어느새 정복!

참 : 구직, 면접, 입사, 근로계약
수 : 휴일, 휴가, 모성보호제도
금 : 퇴직, 해고, 실업급여
하 : 근로시간, 임금, 퇴직금, 임금체불, 체당금제도
목 : 폭언, 폭행, 성희롱 대응방법

어느 토요일 오후, **그녀들의 수다....**



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 그럼, 이제부터 공부해 볼까?

월요일의 학습

학습목표: 인사 시 주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1단원 구직·면접 시 주의할 점은?

1. 구인정보는 워크넷(www.work.go.kr) 등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활용합니다.
2.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회사의 기본 정보를 알아봅니다.
3. 채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사담당자와 전화통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면접 시 성희롱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주의합니다. 1:1면접의 경우 특히 주의



잠깐!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2단원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은?

1. 반드시 근로계약을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을 쓰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하여도 그 자체로 유효하나, 나중에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부인할 경우 입증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우므로 주의)
2. 근로계약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1부를 쟁취두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대신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법적 기준 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법적 기준에 맞춰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Tip

지원서쓰기·면접 등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렵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또는 새로일하기센터)에 문의하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받는다.
- 이력서를 쓸 때는 최근 경력부터 쓰기 (결혼 전 경력도 포함)
- 지원서 세트 구성하기(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본, 신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 자기소개서에는 입사포부를, 경력사항을 쓸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꼭 쓰기

★ 근로계약서 예시

근로 계약서

_____(이하 "갑"이라 함)과와) _____(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2. 근무 장소: _____
3. 업무의 내용: _____
4. 근로시간: _____시 _____분부터 _____시 _____분까지 (휴게시간: _____시 _____분 ~ _____시 _____분)
5. 근무일/휴일: 매주 _____일 또는 매월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___요일
6. 임 금
 - 시간당, 월급: _____원
 - 상여금: 없음(), 있음() _____원
 - 기타급(계수당 등): 없음(), 있음() _____원
 - _____원, _____원
 - _____원, _____원
 -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또는 매월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을에게 직접지급(),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_월 _____일

(갑) 사업장명: _____ (전화: _____)

주 소: _____

대표자: _____ (직명: _____)

(을) 주 소: _____

연 락 처: _____

장 소: _____ (직명: _____)

심화학습 1. 회사생활의 시작, 나의 고용형태는?



※ 정규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직접 임금과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함.

※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경우를 통틀어 부른다.

①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 6개월이나 1년 등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계약직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해지 된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어 이때의 재계약거부는 해고에 해당된다.)

② 단시간 근로자 : 다른 근로자들보다 근무시간이 짧아요!

- 하루 종일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 근로시간(보통 1일 8시간)보다 짧은 경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③ 파견근로자 : 일을 시키는 사업주와 임금을 주는 사업주가 달라요!

-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일을 시키지 않고 다른 회사로 파견을 보내서 그곳의 사용자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경우, 파견직 등

④ 특수고용 근로자 : 시키는 일을 하는데도 근로자가 아니랍니다!

- 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 용역계약을 맺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텔레마케터 등



심화학습 2. 수습기간이 있다구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하며, 수습기간을 둔 경우 나의 입사일은 수습이 시작된 날이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법은 적용되며, 퇴직금, 4대보험 가입기간 등 근속기간 산정에도 수습기간이 포함된다.

심화학습 3. 아르바이트라도 이것만은 보장받자!

1. 급여는 월 1회 이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2.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는다.
3. 오후 10시-오전 6시는 야간근로이므로 시급의 150%를 받는다.
4. 상적인 노동이나 접촉 등 성희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심화학습 4. 단시간 근로자라도 누릴 권 누리자!

비정규직이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화요일의 학습

학습목표 근로시간, 임금, 퇴직금, 임금채분, 재당금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단원 근로시간이란?

- **법정근로시간** : 주40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별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5일제와는 별도 개념임)
- **연장·휴일·야간근로** :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하며(근로자 동의 필수), 이때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150%가 아니라 일한 대기인 100%만 추가 지급. 22시~06시 사이에 근무하는 야간근로나,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도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단원 임금 받을 때 주의할 점은?

1. 임금은 직접 월 1회 이상, 반드시 통화(현금)로 받습니다. (현물은 안 됨).
2.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야 하며, 서면으로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파일로 보관합니다.

3단원 최저임금이란?

노동자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임금으로 국가가 결정하고, 그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4,580원)



심화학습 5. 임금이란?

- **통상임금** : 임금 항목 중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을 합한 것을 말한다. 연장근로수당 등 실제 근로여부나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급이나 식대 교통비 등의 복지성격의 급여는 제외된다. 임금의 항목구분이 없다면 임금총액이 통상임금이 되므로 임금총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한다.
- **평균임금** : 휴업 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 보통 그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4단원 퇴직금(퇴직연금)제도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액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금 산정시점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

※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 12. 1 ~ 2012. 12. 31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 적용, 2013. 1. 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100% 적용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종전의 퇴직금제도 대신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의의	특징
확정급여형(DB)	회사비용으로 계좌가 개설되고 회사가 관리	회사의 적립금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퇴직금에는 법정 퇴직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
확정기여형(DC)	가입자(근로자)별로 계좌가 개설되고 가입자가 관리	회사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계좌에 지급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입자가 알아서 운용

수요일의 학습

학습목표 휴일, 휴가,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단원 휴일에 대해 알아보까요?

주휴일	1주 근무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된다. 그렇지만 꼭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제외)
근로자의 날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서 쉬는 날이다.
기타	법정공휴일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상 휴일로 지정되었다면 휴일이다. (단,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2단원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1년에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3년차부터 격년으로 1일씩 증가되며, 최초 1년간은 1월 개근에 1일씩 발생합니다(15일에서 사용된 일수만큼 제외하고 2년차에 연차휴가 부여). (단,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음)



Tip

올 여름 휴가 계획 중인 직장생활 2년차 나직녀 씨.
자, 올해는 며칠이나 쉴 수 있을까? 음..작년에는 11일을 사용했군요.

근무기간	휴가일수
1년 미만	11일 매달 1일 최대 11일 발생
1년 ~ 2년 미만	15일 연차휴가 - 11일 1년 미만일 때 만약 11일을 사용했다면 = 4일
2년 ~ 3년 미만	15일
3년 ~ 4년 미만	15일 + 1일 최초 1년 + 2년 = 16일
4년 ~ 5년 미만	15일 + 1일 최초 1년 + 3년 = 16일
5년 ~ 6년 미만	15일 + 2일 최초 1년 + 4년 = 17일



3단원 모성보호제도

■ 출산전후휴가와 그 급여

대 상	고용형태나 근무기간 관계없이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의 근로자
기 간	- 출산전·후를 합하여 계속하여 90일(출산후 45일 이상 되도록) - 출산 전 44일+출산일 1일+출산 후 45일 2012. 8. 2부터는 출산 전 44일을 분할하여 사용 가능(심화학습 6 참조)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지원	- 급여액: 통상임금 100% 최초 60일 사업주가 지급, 고용보험관리 = 고용센터에서 나중 30일분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고한도 405만원/월 135만원,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차액 부담)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급여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보호규정	-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제한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전후휴가 후 복귀 시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심화학습 6.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신청해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유산 및 사산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및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심화학습 7.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제도를 더 알아볼까요?

- **유사산휴가** :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자연유산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허용되는 불가피한 인공임신중절은 포함
(2012. 8. 2부터는 이전과 달리 임신 초기부터 유산·사산 휴가 가능)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을 한 경우는 5일
- 임신 12~15주 이내 유산·사산일 경우는 10일
- 임신 16~21주 유산·사산은 30일
- 임신 22~27주 유산·사산은 60일
- 임신 28주 이후 유산·사산은 90일 등 휴가기간이 부여됨
- **태아검진 시간제** : 임신 중인 근로자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임금삭감 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 아내가 출산한 경우 5일 이내(3일 유급,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



■ 육아휴직과 그 급여

대 상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남성 근로자, 단, 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 가능
기 간	• 최대 1년(배우자와 각각 1년 사용 가능)급여지원
급여지원	• 사업주 지급 의무 없음 • 급여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40% 지급 (최고 500만원, 최저 50만원)
보호규정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등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 • 육아휴직 후 복귀 시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잠깐! 출산 휴가,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에 반드시 30일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 신청서 예시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성 명 : 출산예정일 :
소속 및 직급 : 산전후휴가 신청기간 :
주소 및 연락처 :

위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전후휴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주식회사 (회사명) 귀중

★ 육아휴직신청서 예시

육아휴직 신청서

성 명 : 소속 및 직급 :
주소 및 연락처 :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 성명 :
생년월일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및 종료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본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주식회사 (회사명) 귀중

■ 출산·육아휴직 시 사업주 지원제도

육아휴직장려금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지급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부터 육아휴직자를 대체하여 신규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 지급.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 임신중이거나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파견직을 계약기간 종료 즉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1년이상 기간제 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시 첫 6개월 30만원과 그후 6개월간 월 60만원



1단원 직장 내 폭언·폭행에 대해 알아봅니다.

폭언·폭행에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사업주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 포행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3조(폭행의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60조-폭행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모욕죄). *모욕의 방법: 폭언, 폭행, 악담 등

폭언·폭행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폭언·폭행한 내용 그대로 따옴표(" ") 안에 적어놓는다.
2. 고용평등상담실에 즉각 상담을 받는다.
3. 빠른 시일 내에 제 3자인사권자 등, 가해자 등과 함께하는 면담을 신청한다.
4. 폭언이나 폭행 사실에 대해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가해자에게 재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이를 녹취한다.



장간!
필소 휴대폰 녹음기능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5. "나 주장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확실하게 내 피해상황을 말한다.

Tip



"나 주장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주장법 3요소: 너의 행동 + 내가 받은 영향 + 내가 갖는 느낌

예) 과장님이 저에게 "××야"라고 했을 때, 직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것 같아 당황스럽고 불쾌했어요. ○○씨라고 불러주시겠어요?

6. 내 잘못이 아님을 인식하고 내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 폭언·폭행 대응 성공사례



Tip



예기치 않은 사직의 이유 중 상당수는 직장 내 폭언·폭행·성희롱!

직장 내 폭언·폭행·성희롱은 상습적인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심해집니다.

2단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제2조제2호) / 유사내용(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조치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구 분	내 용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된다. 사업주 성희롱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직장내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무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무	피해를 입거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고객 등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율적 해결	근로자가 관련된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노사합의하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제12~14조의2 등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자세한 조언을 얻고 싶은 분은 본회가 발간한 “직장내 성희롱 타파 신개념 학습서” pdf 파일을 본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세요! 아이폰용 어플 “NO 성희롱”도 많이 응용해주세요!

3. 직장 내 성희롱의 대응과 권리구제 방법

(1) 자율적인 해결 노력

상담기관에 지원요청	고용평등상담실 등에 도움을 요청
거부 의사표시와 증거확보	성희롱 중지와 사과 요구하기 증거확보 - 발생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겨두기. 당시 상황을 통화나 면담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녹음 또는 갈무리 하기 등
사내 절차활용	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한 해결 노력

(2) 법적구제 절차

고용노동부에 진정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요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으로 전직해고 등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의 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정과 조치 위한 진정.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진정 가능. 타 기관 중복은 불가
민사 소송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청산적, 물질적 고충을 입힌 데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 고소	성폭력특별법 또는 형법 위반인 성폭력의 경우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 가능

당신의 개인적 권리장전



- 당신은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 당신은 타인의 문제나 나쁜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 당신은 분노할 권리가 있다.
-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 당신은 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당신은 자신의 느낌, 의견, 확신 등을 가질 권리가 있다.
-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거나 상이한 행동 경로를 가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 당신은 변화를 위해 협상할 권리가 있다.
- 당신은 정서적인 지지와 원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당신은 불공정한 대우나 비판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

4. 직장 내 성희롱의 대응 성공사례

성공 사례 1

사무직 A,B씨 “상사에게 성적 모욕을 당했으나 사과를 받았어요”



성공 사례 2

디자이너 C씨 “사장님, 공식적으로 사과와 보상을 요청합니다”



성공 사례 3

간호조무사 K씨 “수시로 성희롱 하던 부원장이 징계를 받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였어요”



1만원 회사를 떠나는 3가지 방식

1) 자진사직

근로자도 30일 전에 가능한 한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직 중인 상태로 무급처리가 되어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이 깎이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Tip

■ 자진사직 시 직장을 구해놓고 그만두세요!

회사가 맘에 안 들고 힘이 들어도 꼭 직장을 구해놓고 그만두세요! 왜냐하면 회사를 그만 두고 구하려면 쫓기는 입장이 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전보다 더 안 좋은 직장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권고사직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종용)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할 때 사직의 이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해고

·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도 미리 해고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문서로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두통보만 받은 경우 반드시 해고통지서를 요구하거나 물증을 남긴 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부당해고구제신청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시 사용자가 해고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 하고, 위반시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



★ 부당해고시 구제 절차

1.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2.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3. 15일 이내 소송재기 예정수용 → 고등법원 → 대법원

근로 4인 이하 사업장은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불가, 해고무효확인소송(5인 이상이면 미만이든 모 아니면 채지 않음)



■ 지정노무사제도 :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미만(2010.06.30 이전 접수된 신청건은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지정노무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의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



Tip

■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꼭 기억할 것!

1. 사용자의 강요가 있어도 절대 사직서는 쓰지 말 것
·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나중에 억울하다 생각해도 해고로 다룰 수 없게 되고 그로써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근거 없는 위법한 조치이므로 거부해야 합니다.
2. 해고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은 이런 게 불리해요!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됨.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 안됨(임금채불 전정 등은 가능),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적용 안 됨

2단원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지급요건

-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재직기간 중 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사유로 아직하였을 것
-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한 상태일 것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예시

(해당 법에는 아래 4가지 이외에 18가지의 사유가 있으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 1년 이내에 2월 이상 임금 체불되어 사직한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임신, 출산, 생후 6년 미만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일수

-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해 지급하며 평균임금의 50%구직급여일액을 받을 수 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아래 참조

[소정급여일수]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4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90%(2012년의 경우, 1원 834원 기준 최저임금액이 36,640원이므로 90%를 계산하면 32,976원)

실업급여 8. 정부지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	· 재직자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다만, 동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원액을 합산한 금액은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 훈련성당을 통하여 훈련을 희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 연간 배움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 교사·강의장 평가보조원·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 안내동영상 시청 → 구직등록 및 2주간 구직활동 후에도 실업상태일 경우 → 훈련성당을 통해 대상자 선정)
	· 재직지원연도(200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기간별로 산정한 금액을 지원





행복지수 UP 카페



메뉴 1. 심리치유를 통한 내면 성장

- **비폭력 대화** / 마셜 B. 로젠버그 지음, 한국NVC센터
- **'앗칭' - 신이 부리는 요술** (김성운 지음, 정신세계사)
-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
(제프리 드윗 지음, 클로스코 지음, 열음사)

◆ **심리치유 카페** '더 홀가본'
(김남구 신사동, <http://www.theholgaboorn.com>)

◆ **심리치유 카페** '멘토'
(미포구 시교동, 02-336-7676, <http://cafe.naver.com/etick>)

■ **비폭력대화** :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나의 욕구/필요와 상대의 욕구/필요가 동시에 만족되며, 서로 즐거운 인간관계의 방법을 배울 수 있음. 가정이나 학교, 기업 등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적용 가능한 대화 모델임.

◆ **교육일정문의** : 한국비폭력대화센터
(www.knvc.org)

메뉴 2. 한방에 해결되는 우리 동네 문화하일

- **지금 서울에서 가장 즐거운 곳은 어디일까?**

• **e문화북백방** <http://culture.seoul.go.kr> : 각종 문화행사의 일정을 알고 싶다면 꼭 둘러봐야 할 사이트
• **Visit Seoul** (서울관광정보포털사이트) <http://www.visitseoul.net> : 관광 명소, 축제, 숙박시설까지 관광지로서의 서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

-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

국립 현대미술관	http://www.moca.go.kr	국립 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서울 시립미술관	http://seoulmca.seoul.go.kr	김재경선기념관	http://gjs.or.kr
덕수궁미술관	http://seoulmca.seoul.go.kr	서울역사박물관	http://www.museum.seoul.kr
아트선재센터	http://www.artsonje.org		
근현대디자인박물관	http://www.designmuseum.or.kr		
국립 고궁박물관	http://www.gogung.go.kr		

- **날씨 좋은 날, 밖으로 나가자!**

아시아태평양축제 국제 아동청소년 공연축제 / 7월 중 종로구 대학로 일대	http://www.asiafestivalkorea.org
청계천 수상페스티벌 / 4~10월 매일 첫번째 토요일 청계5가 광희동 오간수교	http://blog.naver.com/fashionriver
문화와 음악이 흐르는 한강 / 5~9월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	http://hangang.seoul.go.kr
시민과 함께하는 캐리커처 / 4~10월 매주 토·일요일	http://www.ani.seoul.kr
하이서울페스티벌 / 11월 중 서울 전역	www.hiseoulfest.org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8~9월 중대 일대	www.seoulfringe festival.net
서울역사축제 / 10월 중 월드컵공원	http://worldcuppark.seoul.go.kr
서울디자인한마당 / 9~10월 잠실종합운동장	http://sdl.seoul.go.kr
서울세계꽃축제 / 10월 중 63빌딩 앞	http://www.bulnon.com
서울 먹거리 페스티벌 / 11~12월	http://www.topokki.com

-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보자!**

국제클래식스타제 나눔콘서트 / 4~12월 서울역사박물관	http://www.museum.seoul.kr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속속음악회' / 4~10월 능동 어린이대공원 능동속속의무대	www.seoulpops.com
서울드럼페스티벌 / 9~10월	www.seouldrum.go.kr
울트라뮤직페스티벌 / 8월 초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www.ultramusicfestival.com
구로인디뮤직페스티벌 / 7월 초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www.guroartsvalley.or.kr
쌍지오가닉사운드페스티벌 / 매년 10월 서울도심	www.ssamziesoundfestival.com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 매년 10월 중	http://www.grandmintfestival.com

- **남다른 주제와 메시지가 있는 영화를 찾는다면!**

인디다큐페스티발 / 3월경	www.sido1.org	이주인영화제 / 7~8월경	www.mwfl.org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4월경	www.wfls.or.kr	EBS 국제다큐영화제 / 8~9월경	www.eidf.org
전주국제영화제 / 4월경	www.jff.or.kr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 11월경	www.asif.or.kr
서울환경영화제 / 5월경	www.gffs.org	서울독립영화제 / 12월경	www.sif.or.kr
마장선 단편영화제 / 6월경	www.msl.or.kr	여성영화인축제 / 12월경	www.wfilm.com
부산국제 판타스틱영화제 / 7월경	www.pifan.com		



메뉴 3. '직장맘' 이라면 생겨줘야 할 정보들

◆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 <http://cafe.naver.com/remonterrace.cafe>
임스출력 <http://cafe.naver.com/imsanbu>

: 결혼생활, 임신, 출산, 육아, 안태어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가득한 곳

- **'존 가트맨 최상에 박시의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조벽, 최상애, 존 가트맨 지음, 한국경제신문사)
- **'하루 10분 내 아이를 생각하다'** (서진석 지음, 비비북스)

>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하는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 직장맘들의 삶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서울시 입안기관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웠다고요? 아이 맡길 수 있는 보육정보를 알고 싶으시다고요?
- 직장맘 채용~퇴직 까지 법적지원 서비스 제공, 노무사가 지원합니다.
- 직장맘 3고충(식당, 가족관계, 개인사원) 및 보육정보 등 원스톱 종합정보를 제공합니다.
- 오늘도 어김없이 아근... 우리 애들 밥은 누가 먹이나... 숙제는 어찌고...
-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치킨 돌봄 서비스(자녀급식지원, 돌봄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012. 9월부터 시행예정)
- 직장맘들끼리 통하는 수다 한번 밀고 싶대... 통하는 직장맘끼리 친구하고 싶어요~
- 수다공간 제공, 맘카페 운영, 개방형 공간 / 사진촬영 이용가능
- 직장맘 커뮤니티 발굴 및 자립교육제공 / 상담회
- 찾아가는 직장맘 생 산적인 수다 프로그램 운영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 전화 : 332-7171 ■ 상담전화 : 335-0101 ■ 홈페이지 : www.workingmom.or.kr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여성인력개발센터 <http://www.vocation.or.kr>

강북 센터	02-980-2377	송파 센터	02-430-6070
강서 센터	02-2692-4549	영등포 센터	02-858-4514
관악 센터	02-886-9523	용산 센터	02-714-9762
구로 센터	02-867-4456	은평 센터	02-389-1976
노원 센터	02-951-0187	종로 센터	02-765-1326
동대문 센터	02-525-1121	중랑 센터	02-3409-1947
서대문 센터	02-332-8661		

■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중부 여성발전센터	02-719-6307	http://jungbu.seoulwomen.or.kr/
서부 여성발전센터	02-2607-8791	http://seobu.seoulwomen.or.kr/
남부 여성발전센터	02-802-0922	http://nambu.seoulwomen.or.kr/
북부 여성발전센터	02-3399-7607	http://bukbu.seoulwomen.or.kr/

■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02-460-2300 <http://wrd.seoulwomen.or.kr/>

■ 기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국번없이 1350번)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번)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국번없이 132번)
노동위원회	www.nlrc.go.kr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http://www.seoulwomen.or.kr
여성가족부 공익포털 위민넷	www.women.go.kr



(사)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일하는 여성들이 일터와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일하는 여성의 권익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용평등상담실 · 평등의 전화 (전화 : 02-3141-9090)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서울지부 · 서울서부지부 운영 (전화 : 02-3141-3019)
- 부설기관
 - 구로살터지역자활센터(보건복지부 지정)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서울시 지정)
 - 서울특별시 직장암지원센터(서울시 위탁)
- 상담전화 : 02-3141-9090 ■ 대표전화 : 02-3141-3011
- F A X : 02-3141-3022 ■ 이 메 일 : equaline@hanmail.net
- 홈페이지 : www.equaline.or.kr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5층(2호선 홍대입구역 1번출구)

기증

- 발 행 일 2012년 7월 1일
- 세 작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조 편 이 이부민, 신문용(서울여성노동자회)
김명희, 황현숙, 이호삼(서울특별시 직장암지원센터)
- 사진출처 산영화

※ 이 책자는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